

## 37. 보증규정중개정규정

주택사업공제조합 운영 003-21('99. 1. 11)

### 개 정 이 유

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(98.12.31)으로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의 개시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 변경됨에 따라 조합의 보증수수료 계산기간을 이에 일치시키고자 동규정을 개정함

### 주 요 골 자

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기간의 수수료 계산기간을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함(제16조제1항제1호)

보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하자보수보증 : 사용검사일(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로부터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되 월미만의 일수가

있는 경우 그 일수가 16일 이상인 때에는 이를 1월로 산입하며, 15일 이하인 때에는 이를 버리고 계산함

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 (보증수수료의 계산기간)</p> <p>①보증수수료의 계산기간은 보증기간개시 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보증수수료 계산기간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.</p>	<p>제16조 (보증수수료의 계산기간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하자보수보증 : <u>사용검사일</u>로부터 하자 보수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되 월미만의 일수가 있는 경우 그 일수가 16일 이상인 때에는 이를 1월로 산입하며, 15일 이하인 때에는 이를 버리고 계산함.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1. ----- : <u>사용검사일(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로부터</u>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주택회보